



# 7월부터 달라지는 환경관련 제도

7월 1일부터 환경컨설팅회사의 자율등록제가 최초로 도입·시행되며,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이 확대된다. 또한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율도 조정이 된다. 이에 본지에서는 그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.

편집부

## 7월부터 달라지는 제도

번호	제목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및 시행일	담당부서
1	환경컨설팅회사 등록제	〈신설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환경컨설팅회사 등록제 시행</li> <li>- 기업의 환경경영체제 구축 등에 대한 조사·분석·진단·상담 정보제공·교육·대행 서비스 등을 행하는 회사로서 일정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인력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환경컨설팅회사로 등록</li> </ul>	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2(2006.7)	환경부 환경경제과 ☎ (02)2110-6686
2	정부 신기술 인증제도 통합운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정부 부처별 신기술 인증 제도 운영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과학기술부, 환경부, 건설교통부의 신기술제도를 신기술(NET) 인증으로 통합 운영</li> <li>- ET 마크를 NET마크로 통합</li> <li>- 신기술활용증진협의회 구성·운영</li> </ul>	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(2006.7)	환경부 환경기술과 ☎(02)2110-6720
3	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확대시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대기환경규제지역</li> <li>- 서울, 인천, 경기, 대구, 부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확대 시행지역</li> <li>- 인구 50만 이상 도시지역</li> <li>- 광주(7.15), 대전(7.1), 울산(11월 경)</li> </ul>	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3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의2(2006.7)	환경부 교통환경관리과 ☎ (02)2110-6858
4	먹는물에 먹는 해양심층수 추가	〈신설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먹는물에 수돗물, 먹는샘물외에 먹는해양심층수 추가</li> <li>- 수질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설정·관리하고, 먹는해양심층수의 제조·유통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</li> </ul>	먹는물관리법 제3조(2006.7)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(2006 제정예정)	환경부 토양지하수과 ☎ (02)2110-6768
5	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율 조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먹는샘물 : 평균판매가액의 7.5%</li> <li>기타샘물 : 샘물 생산원가의 7.5%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먹는샘물 : 평균판매가액의 6.75%</li> <li>기타샘물 : 수돗물의 요금을 평균한 금액과 물이용부담금을 평균한 금액의 더한 금액</li> </ul>	먹는물관리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(2006.7)	환경부 토양지하수과 ☎ (02)2110-6768



### (1) 환경컨설팅회사의 자율등록제 최초 도입 · 시행

환경부 환경경제과 (☎02-2110-6682)

- 환경성 규제강화와 이로 인한 친환경적인 경영의 확산 등으로 환경컨설팅업이 유망 업종으로 대두됨에 따라 환경컨설팅업의 체계적인 지원 · 육성을 위하여 2006년 7월 1일부터 환경컨설팅회사의 자율등록제를 도입 · 시행합니다.
  - 「상법」상의 회사로서 아래업무를 행하는 자가 정부의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인력기준(고급인력 1인 이상, 일반인력 2인 이상)을 갖추어 유역환경청장(지방환경청장)에게 등록을 하여야함
    - 국내외 환경 관련 규제에 대한 조사 · 분석 · 상담 및 정보제공
    - 환경관련 등록 및 인 · 허가 등 환경행정 절차에 대한 상담 · 정보제공 및 대행
    - 사업장과 각종 시설의 입지 및 건설, 운영관리 등과 관련된 환경규제에 대한 진단 및 조사 등
    - 환경오염의 예방, 환경산업체의 창업 및 사업장의 환경성에 대한 진단 · 조사 등 및 교육
    - 환경기술의 개발 및 실용화에 대한 진단 · 조사 등 및 교육 등
  - 등록된 환경컨설팅회사에 대한 지원 사항
    - 환경컨설팅 관련 정보의 제공
    - 환경컨설팅 인력에 대한 교육

### (2)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 확대

환경부 대기보전국 교통환경관리과 (☎02-2110-6858)

- 정밀검사 시행지역이 수도권 등 대도시에서 모든

광역시로 확대됩니다.

-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는 실제 도로상에서 수행하는 것과 같은 조건에서 검사하는 부하방식의 검사방법으로 기존의 정지상태에서 검사하던 무부하검사방법을 개선한 것이며, 2002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수도권 등 대기오염 우심지역에서 시행하다 2006.7월부터 모든 광역시로 확대 시행됩니다.
  - 기존 시행지역 : 서울특별시('02.5), 인천광역시('03.3), 경기도('03.4), 대구광역시('04.7), 부산광역시('05.7)
  - 확대 시행지역 : 광주광역시('06.7), 대전광역시('06.7), 울산광역시('06.11 예정), 용인시('06.5)
- ※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해당 시 · 도의 조례제정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
### (3)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율 조정

환경부 상하수도국 토양지하수과 (☎02-2110-6768)

- 먹는샘물의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율은 인하고, 청량음료, 주류 등의 기타샘물은 부과방식을 변경하였습니다.
  - 동일한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먹는샘물과 기타샘물간 부담금의 형평성 제고 요구 반영
  - 먹는샘물은 현행 평균판매가액의 7.5%를 부과하던 것을 6.75%로 인하
    - 톤당 6,867원에서 6,180원으로 인하
  - 기타샘물은 현행 생산원가의 7.5%를 부과하던 것을 수돗물의 요금을 평균한 금액과 물이용부담금을 평균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조정
    - 톤당 38원에서 수돗물 이용요금인 약 690원 수준으로 조정
- 먹는샘물과 기타샘물간 부담금 비율이 약 18:1에서 9:1 수준으로 개선되어 샘물간 부담금의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